

# 독일의 가짜 뉴스(Fake News)에 대처하기 위한 ‘소셜 네트워크 법집행법’(NetzDG)

박희영

법학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 I. 개관

독일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또는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공개되는 증오범죄나 가짜 뉴스와 같은 처벌될 수 있는 콘텐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소셜 네트워크에서 법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이하 ‘네트워크 법집행법’)<sup>01</sup>을 도입하였다. 이 법률은 2017년 6월 30일 연방의회를 통과하여 2017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하지만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가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3개월의 유예기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sup>02</sup> 이 법률은 201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률의 핵심 내용은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에게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위법한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차단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5백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 II. 입법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인터넷과 특히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사회적 담론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

<sup>01</sup>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Netzwerkdurchsetzungsgesetz – NetzDG) vom 1. September 2017, BGBl I, S. 3352. 약식 표기 : 소셜 네트워크 법집행법, 약자 표기 : NetzDG.

<sup>02</sup> 네트워크 집행법 제6조 제2항 : 위법한 콘텐츠에 대한 이의제기의 취급과 관련한 절차는 이 법률의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도입되어야 한다.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가 제1조의 요건을 이후의 시점에 충족한 경우에는 제3조의 절차는 이 시점부터 3개월 후 도입되어야 한다(제6조 제2항).

다. 인터넷 토론문화는 자주 공격적이고 증오로 가득 차 있으며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증오범죄와 그 밖의 가별적 콘텐츠로 누구나 생각, 피부색 혹은 출신, 종교, 인종 또는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명예를 훼손당할 수 있다. 증오범죄 및 기타 가별적 콘텐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형사소추되지 않으면 개방적이며 평화적인 민주주의의 공동체 생활이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된다.

더욱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 당시 성행했던 가짜 뉴스의 경험으로 독일에서도 소셜 네트워크에서 가별적 가짜 뉴스(Falschnachrichten, Fake News)의 척결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과제가 되었다.<sup>03</sup> 따라서 가령 범죄행위를 통해서 교묘하게 속임으로써 국민선동, 모욕, 중상적 명예훼손, 공공의 평화 교란과 같은 객관적으로 가별적인 콘텐츠를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서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법집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었다.

특히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증오범죄와 기타 가별적 콘텐츠의 광범위한 유포로 연방법무부는 이미 2015년 네트워크 운영자 및 시민단체의 대표자와 함께 대책위원회(Task Force)를 설치하였다. 이 태스크 포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증오범죄와 기타 가별적 콘텐츠를 다루는 방법을 개선하는데 동의하였다. 기업들은 비판적인 글들을 등록하도록 이용자 친화적인 메커니즘을 갖추고 등록된 다량의 글을 언어적 법적인 능력을 갖춘 처리 팀에 의해서 24시간 이내에 심사하여 이들이 위법한 경우에는 삭제하도록 의무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러한 심사 기준은 독일 법률이었다.

이러한 개선방법은 기업의 자율책임이었다. 하지만 기업의 자율책임만으로 이에 대처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일부의 가별적 콘텐츠만 삭제되었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네트워크(jugendschutz.net)는 2017년 1월과 2월 소셜 네트워크의 삭제 실무를 조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증오범죄 및 기타 가별적 콘텐츠에 대한 이용자의 이의제기는 항상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았고 충분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증오범죄와 기타 가별적 콘텐츠에 대한 특히 이용자들의 이의제기를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셜 네트워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 법률안을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위한 법적인 컴플라이언스(준법준수) 규정이 도입되었다. 증오범죄 및 기타 가별적 콘텐츠의 취급에 관한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에게 법률상 보고의무, 효과적인 이의제기 관리

<sup>03</sup> BT-Drs. 18/12356, S. 1, 11.

및 국내의 송달 대리인의 임명 등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고 감독의무가 부여될 수 있다. 그밖에 인터넷에서의 인격권 침해의 피해자가 법원의 명령을 통하여 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자의 기본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sup>04</sup>

### III. 법률의 구성 및 내용

#### 1. 법률의 구성

소셜 네트워크 법집행법은 이 법률 자체의 제정과 통신미디어서비스법(TMG)<sup>05</sup>의 이용자 기본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규정의 개정 그리고 효력발생 규정 등 3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조항법률(Artikelgesetz)이다.<sup>06</sup> 소셜 네트워크에서 법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은 6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조는 적용범위, 제2조는 보고의무, 제3조는 위법한 콘텐츠에 대한 이의제기의 취급을 규정하고 있다. 제2조와 제3조의 위반에 대하여 제4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5조는 국내 송달대리인의 임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6조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통신미디어서비스법 제14조 이하는 인격권 침해의 피해자에게 이용자의 기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법률의 주요 내용

##### 가. 적용 범위(제1조)

##### (1) 소셜 네트워크의 개념

소셜 네트워크 법집행법의 규정들은 소셜 네트워크에 적용된다. 이 법률에서 소셜 네트워크(soziale Netwerke)란 “이용자가 임의의 내용을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거나 공중의

<sup>04</sup> BT-Drs. 18/12356, S.2.

<sup>05</sup> 통신미디어서비스법(TMG)은 통신미디어서비스제공자, 즉 인터넷서비스제공자(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과 전자적 통신서비스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sup>06</sup> 조항법률이란 특정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관련되는 모든 법률 규정을 동시에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입법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단행 법률이 한 개의 조로 구성된다.

이용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인터넷 플랫폼을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통신미디어서비스제공자”로 정의하고 있다(제1조 제1항). 소셜 네트워크의 소재지나 영업소가 독일에 있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는 언론 편집에 의해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나 개인통신을 위해서 또는 특별한 콘텐츠의 배포를 위해서 특정되어 있는 플랫폼은 이 법률의 소셜 네트워크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업상 네트워크, 전문포털, 온라인 게임, 물건판매플랫폼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배제된다.<sup>07</sup> 즉 예를 들어 아마존이나 월드 어브 워크래프트 등은 예외이다.

개인통신 서비스도 명백하게 예외로 하고 있다. 입법이유에 따르면 플랫폼이란 개념상 통신공간을 전제로 하는데 개인통신 서비스는 그러한 통신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sup>08</sup> 입법자는 개인통신서비스의 예로서 전자우편과 메신저 서비스를 들고 있다.<sup>09</sup> 구체적인 기술적인 구성에 따라서 가령 WhatsApp과 같은 일부 서비스는, 통신미디어서비스법(TMG) 제1조 제1항 제1호의 통신미디어서비스가 아니라, 전기통신법 제3조 제24호의 전기통신서비스로서 분류될 수 있어서 처음부터 소셜 네트워크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중통신과 개인통신의 구별은 명확하지 않다. 일부의 서비스는 그룹 내에서 다양한 통신가능성과 통신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플랫폼에서 구별이 가능한 경우 대중통신의 구성요소는 이 법률에 포함된다.<sup>10</sup>

## (2) 제외되는 소셜 네트워크

등록된 국내의 이용자가 2백만 이하인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는 동법 제2조의 보고의무와 제3조의 위법한 콘텐츠에 대한 이의제기의 규정과 방법을 갖출 의무가 면제된다(제1조 제2항). 등록의 기준은 이용관계의 존재와 관련된다. 이 경우 단순한 웹사이트 방문자는 고려되지 않는다.<sup>11</sup> 독일에 거주하는 자는 국내의 이용자이다.<sup>12</sup> 소규모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의 경우 제2조와 제3조의 적용에서 배제되지만 그 밖의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제5

<sup>07</sup> BT-Drs. 18/13013, S.20.

<sup>08</sup> BT-Drs. 18/13013, S.20f.

<sup>09</sup> BT-Drs. 18/13013, S.20.

<sup>10</sup> Guggenberger, Das Netzwerkdurchsetzungsgesetz in der Anwendung, NJW 2017, S.2578.

<sup>11</sup> BT-Drs. 18/13013, S.21.

<sup>12</sup> BT-Drs. 18/12356, S.19.



조에 의해서 국내의 송달대리인(민사절차에서)과 국내의 수신자를 임명해야 하고 통신미디어서비스법 제14조 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정보제공의무도 준수해야 한다.

### (3) 위법한 콘텐츠의 개념

위법한 콘텐츠는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른 위법한 콘텐츠란,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헌조직 선전물 반포(제86조), 위헌조직 표시 사용(제86a조),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폭력의 예비(제89a조),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폭력 행사의 지도(제91조), 간첩목적의 위조(제100a조), 공연한 범죄선동(제111조), 범죄위협에 의한 공공평온교란(제126조), 범죄단체조직(제129조) 테러단체조직(제129a조), 외국에서의 범죄단체와 테러단체(제129b조), 국민선동(제130조), 폭력물 반포 등(제131조), 범죄의 대가 지급 및 찬양(제140조), 신앙, 종교단체, 세계관단체 등 모욕(제166조), 금지된 매춘의 수행(제184d조)과 관련한 아동음란물 반포, 취득 및 소지(제184b조), 모욕(제185조), 비방(제186), 중상(제187조), 사진촬영을 통한 고도의 인격적 사생활 침해(제201a조), 협박(제241조), 증거로 중요한 데이터의 위작(제269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정당화되지 않는 콘텐츠로서 소셜 미디어에서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형벌 규정들은 민주적 법치국가, 공공질서, 개인의 명예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정당화 사유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sup>13</sup> 형법 규정의 구성요건과 정당화 사유를 명시하였다고 해서 형법 제3조 내지 제9조에 의한 독일 형법의 적용가능성에 따라 위법한 콘텐츠를 국내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직접 도출되지 않는다. 이 법률의 보호 목적이 오로지 특정한 피해자 개인의 보호에 있거나 개별 형벌구성요건 자체가 직접 특별한 국내 관련성을 요구하는 경우에 장소적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sup>14</sup> 예를 형법 제130조의 국민선동죄의 경우는 장소적 적용범위가 국내로 제한된다.

#### 나.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의무(제2조)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는 당해 연도에 위법한 콘텐츠에 대해서 100개 이상 이의제기를

<sup>13</sup> BT-Drs. 18/13013, S.21; BT-Drs. 18/12356, S.19f.

<sup>14</sup> Handel, Hate Speech – Gilt deutsches Strafrecht gegenüber ausländischen Anbietern sozialer Netzwerke?, MMR 2017, S.227.

받은 경우 자신의 플랫폼에서 위법한 콘텐츠에 관한 이의제기의 취급에 관한 제2조 제2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독일어로 된 보고서를 반년 마다 작성하여 관보 및 자신의 홈페이지에 늦어도 반년이 지난 후 한 달 이내에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제2조 제1항). 이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9가지로 분류되어 있다(제2조 제2항).<sup>15</sup> 첫 보고서는 2018년 상반기부터 작성된다(제6조 제1항).

#### 다. 위법한 콘텐츠에 대한 이의제기의 취급 방법(제3조)

##### (1) 이의제기 처리의 기본 원칙

제3조는 위법한 콘텐츠에 대한 이의제기의 취급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소셜 네트워크의 효과적인 이의제기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즉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는 위법한 콘텐츠에 관한 이의제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효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제3조 제1항 제1문). 이 절차에서 상세한 요구사항은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는 위법한 콘텐츠에 대한 이의제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용자 친화적인 절차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절차는 쉽게 알 수 있고 직접 접할 수 있으며 항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제3조 제1항 제2문). 이러한 요청은 통신미디어서비스법 제5조에 의한 통신미디어서비스제공자의 정보제공의무를 위한 법적 기준과 일치한다. 기존의 소셜 네트워크의 이의제기 시스템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기준들에 의해서 더욱 발전되어야 한다. 소셜 네트워크의 이의제기시스템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소셜 네트워크가 위법한 콘텐츠를 개인을 통해서 처리되거나 이러한 직무를 외부의 서비스제공자에게 아웃소싱하는 것과 상관없이 적용된다.<sup>16</sup>

<sup>15</sup> 제2조 제2항 : 이 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플랫폼에 있는 가법적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가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2. 위법한 콘텐츠에 관한 이의제기를 전달하기 위한 메커니즘의 설명 및 위법한 콘텐츠의 삭제 및 차단을 위한 결정 기준의 설명. 3. 이의제기 기관과 이용자의 이의제기에 따라서 그리고 이의제기의 사유에 따라서 분류된 보고기간에 제기된 위법한 콘텐츠에 관한 이의제기의 수. 4. 이의제기의 처리를 관할하는 작업반의 조직, 인적 자원, 전문가 및 언어전문가 그리고 이의제기의 처리를 관할하는 직원의 교육 및 지원. 5. 협회에 이의제기 기관이 존재하는지를 알려주는 협회의 구성원 여부. 6. 결정을 위해서 외부기관에게 조언을 구한 이의제기의 수. 7. 이의제기 기관 및 이용자에 의한 이의제기와 제3조 제2항 제3호 a의 사례가 존재하였는지, 이 사례에서 이용자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그리고 제3조 제2항 제3호 b에 의한 승인된 자율규제 기관으로 전달이 되었는지의 이의제기의 이유에 따라서 분류된 보고 기간 동안 이의 제기된 콘텐츠가 삭제 및 차단된 이의제기의 수. 8. 이의제기 기관 및 이용자의 이의제기, 이의제기의 이유 및 “24시간 이내”/“48시간 이내”/“일주일 이내”/“이후 시점에” 따라서 분류된 소셜 네트워크에 이의가 제기된 접수와 위법한 콘텐츠가 삭제 또는 차단된 사이의 시간. 9. 이의제기에 관한 결정의 이의제기자 및 이의 제기된 콘텐츠가 저장되어 있는 이용자에게 대한 통지 조치.

<sup>16</sup> BT-Drs. 18/12356, S.22.

## (2) 개별적 처리 절차

이 법률의 목적 규정은 소셜 네트워크의 이의제기 처리 시스템을 정하고 있는 제3조 제2항이다. 우선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는 이용자의 이의제기를 신속하게 인식하고 이의제기에서 신고된 내용이 위법한지 그리고 이를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것인지를 지체 없이 심사해야 한다(제3조 제2항 제1호). 이 조항은 위법한 콘텐츠를 인식한 후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하는 통신미디어서비스법 제10조<sup>17</sup>에 포함된 통신미디어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보충한 것이다. 이의제기 처리 팀 내의 전문가가 이를 인식한 때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의 인식이 존재한다.<sup>18</sup> 처리 팀의 전문가들은 신고된 내용의 삭제 및 차단에 대한 전권을 가진 자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만이 이 규정에 요구하는 심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명백히 위법한 콘텐츠의 처리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는 명백하게 위법한, 즉 명백하게 가벌적인 내용을 24시간 이내에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한다(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 제1조 제3항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그 내용은 명백하게 위법한 것이다. 이 규정을 통해서 증오범죄와 폭력 찬양 그 밖의 명백하게 가벌적인 콘텐츠의 사례들은 소셜 네트워크에 의해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삭제될 수 있게 된다. 이 규정은 명백하게 위법한 콘텐츠만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에게 부여된 24시간은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24시간 규정은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와 관할 형사소추기관은 명백히 위법한 콘텐츠의 삭제나 차단 시점을 합의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제2호 후단). 그 결과 필요한 수사처분(특히 증거 확보)이나 진행 중인 수사절차를 위태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개별적인 경우에는 대기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sup>17</sup> TMG 제10조(정보의 저장)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를 위해서 저장하는 타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서비스제공자가 위법한 행위 또는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고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그에게 위법한 행위 또는 정보가 명확하다는 사실이나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2. 서비스제공자가 이러한 인식을 하자마자 정보를 제거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한 경우. 제1문은 이용자가 서비스제공자의 지배하에 있거나 그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up>18</sup> BT-Drs. 18/12356, S.22.

#### (4) 기타 위법한 콘텐츠의 처리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는 신고된 내용이 명백하게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일주일 이내의 적정한 기간에 주의 깊게 심사를 해야 한다(제3조 제2항 제3호).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는 이 기간 내에 신고된 내용의 작성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중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 내에 외부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따라서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가 시간적 압박으로 글들을 삭제하는 것(위축효과, chilling effect)이 방지될 수 있다. 동시에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는 신고된 모든 내용이 비록 명백하게 위법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는 이의제기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위법성에 관한 판단을 동조 제6항 내지 제8항<sup>19</sup>에 따라 승인받은 자율규제기관에게 이전하여 이의 판단을 따를 수 있다. 내용이 위법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삭제되어야 한다. 그 내용이 이 법률의 기준에 따라서 적법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는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해서는 안 된다.

#### (5) 증거 목적으로 콘텐츠 보관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가 신고된 내용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증거 목적으로 콘텐츠를 확보하여 10주간 보관해야 한다(제3조 제2항 제4호). 이것은 특히 형사소추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입법자는 전기통신법 제113조 제1항 제1호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있다.<sup>20</sup> 전기통신법은 통신사실확인자료(Verkehrsdaten)를 10주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21</sup> 10주의 보관기간은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을 고려한 것이다.

19 제3조 (6) 기관은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 법률에서 의미하는 자율규제기관으로서 승인될 수 있다.

1. 심사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경우.
2. 7일 이내에 적정한 장비와 신속한 심사가 확보되는 경우.
3. 심사의 취급과 과정 및 연결된 소셜 네트워크의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결정의 심사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 절차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4. 이의제기 담당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5. 시설이 다수의 소셜 네트워크나 적절한 장비를 확보한 기관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우. 그 밖에 이 시설이 추가의 제공자 특히 소셜 네트워크의 가입을 개방해야 한다.

(7) 자율규제기관의 승인에 관한 결정은 제4조에 언급된 행정기관이 한다.

(8) 승인은 사후에 그 요건이 탈락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될 수 있거나 단서 규정을 둘 수 있다.

20 BT-Drs. 18/12356, S.23.

21 이에 대해서는 민영성/박희영, 통신비밀보호법상 휴대전화 위치정보의 실시간 추적 허용과 입법방향 : 독일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권과 비교하여,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4호(통권 제112호, 2017·겨울), 203-235; 민영성·박희영, 독일에서의 통신정보보관제도의 제도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7권 제2호, 통권 88호, 2016.5, 89-109 참조.

### (6) 통지, 이유제시, 기록 등

이의 제기자와 이용자는 소셜 네트워크의 모든 결정에 관하여 지체 없이 통지를 받을 수 있다. 콘텐츠의 삭제 및 차단 그리고 조치의 거부도 지체 없이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제3조 제2항 제5호). 이유 제시는 저장되어 있는 콘텐츠의 삭제나 차단에 반대하는 이용자가 자신의 표현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적시에 적합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자신의 '정당한 표현'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삭제되도록 수인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모든 이의제기와 이의 시정을 위해서 취해진 조치들은 전자상거래지침(2000/31/EC)과 시청각 미디어지침(2010/13/EC)의 적용영역 내에서 기록되어야 한다.

### (7) 감시 및 통제

소셜 네트워크 관리자는 이의제기의 취급을 매일 통제하여 감시해야 한다. 접수된 이의 제기를 취급함에 있어서 조직적인 결함은 지체 없이 제거되어야 한다.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는 이의제기를 처리하는 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하지만 적어도 반년마다 독일어로 된 교육 및 지도를 해야 한다(제3조 제4항). 한편, 소셜 네트워크의 효과적인 이의제기의 처리절차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위임된 자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제3조 제5항).

### (8) 경과 규정

위법한 콘텐츠에 대한 이의제기의 취급과 관련한 절차는 이 법률의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도입되어야 한다.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가 제1조의 요건을 이후의 시점에 충족한 경우에는 제3조의 절차는 이 시점부터 3개월 후 도입되어야 한다(제6조 제2항).

#### 라. 국내의 송달대리인(제5조)

소셜 네트워크에서 법집행의 경우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에게 법무청이나 과태료 부과기관 그리고 당사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대화파트너의 부재와 독일에 있는 플랫폼 운영자의 송달 주소의 부재이다. 따라서 제5조 제1항은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가 국내에서 송달대리인을 임명해야 하고 자신의 플랫폼에 쉽게 알 수 있고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를 알리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것은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가 이 법률에 따른 과태료 절차에서 혹은 위법한 콘텐츠의 유포에 따른 법원의

절차에서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제5조 제1항).

또한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는 국내 형사소추기관의 정보제공요청에 대해서 국내에서 수령권한이 있는 자가 임명되어야 한다. 수령권자는 이에 따른 정보제공요청에 대하여 48 시간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정보제공요청에 대하여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제5조 제2항).

#### 마. 과태료 처분(제4조)

##### (1) 질서위반행위(제4조 제1항)

위법한 콘텐츠에 대한 이의제기의 취급에 관한 보고의무와 절차규정의 위반에 대해서 최고 5백만 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국내의 송달대리인 및 수취인의 임명에 관한 규정의 위반은 최고 5십만 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8호). 과태료 관할 기관은 법무부 산하 기관인 법무청(Bundesamt für Justiz)이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개별적 사안은 8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첫째, 제2조 제1항 제1문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완전하게 하지 않거나 적시에 하지 않거나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규정된 방식으로 하지 않거나 적시에 하지 않는 경우(제4조 제1항 제1호). 둘째, 제3조 제1항 제1문에 언급된 이의제기의 취급 절차(방법)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이의제기담당자 혹은 이용자에 의해서 이해되지 않거나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거나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경우(제4조 제1항 제2호). 셋째, 제3조 제1항 제2문을 위반하여 여기에 언급된 절차가 이용될 수 없거나 정확하게 이용될 수 없는 경우(제4조 제1항 제3호). 넷째, 제3조 제4항 제1문을 위반하여 이의제기의 취급이 감시되지 않거나 제대로 감시되지 않는 경우(제4조 제1항 제4호). 다섯째, 제3조 제4항 제2문을 위반하여 조직적인 결함이 제거되지 않거나 적시에 제거되지 않는 경우(제4조 제1항 제5호). 여섯째, 제3조 제4항 제3문을 위반하여 교육 또는 지도가 제공되지 않거나 적시에 제공되지 않는 경우(제4조 제1항 제6호). 일곱째, 제5조를 위반하여 국내의 송달대리인 혹은 국내의 접수권자를 임명하지 않는 경우(제4조 제1항 제7호). 여덟째, 제5조 제2항 제2문을 위반하여 접수권자로서 정보제공요청권에 응하지 않은 경우(제4조 제1항 제8호).



## (2) 법원의 선결 판결 요청

관할 행정기관은 삭제되지 않거나 차단되지 않은 내용이 제1조 제3항의 위법한 콘텐츠라고 결정하려고 한다면, 그 전에 그 위법성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제기해야 한다(제4조 제5항). 입법이유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를 소셜 네트워크의 체계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 선결 판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선결 판결 요청은 일반적인 질서위반행위절차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특별한 조치로 이 법률에서 새로 도입한 것이다. 선결 판결의 요청은 소셜 네트워크의 견해도 함께 첨부되어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청구에 대해서는 구두변론 없이 결정될 수 있다.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고 행정기관은 이에 구속된다.

### 바. 통신미디어서비스법(TMG) 개정

통신미디어서비스법 제14조에 따르면 서비스제공자는 자신과 이용자 사이에 통신미디어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관계의 성립, 내용 또는 변경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이용자기본정보, Bestandsdaten).<sup>22</sup> 그리고 서비스제공자는 이러한 정보를 형사소추, 주경찰기관의 위협예방, 연방 및 주의 헌법보호청, 연방정보기관 또는 군사정보기관 또는 국제테러의 위협 방지를 위한 직무와 관련한 연방범죄수사청의 법률상 직무수행을 위해서 또는 지적재산권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관할 기관의 명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인격권 침해의 경우나 다른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의 경우 민사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청구할 수 없었다. 연방대법원도 의사평가포털 판결<sup>23</sup>에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제14조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14조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도 법원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sup>24</sup>

서비스제공자는 개별적인 경우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이용자기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것은 민법상의 청구권을 이행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네

<sup>22</sup> 우리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의 '통신자료'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sup>23</sup> 박희영, 인터넷 포털 운영자는 인격권 침해 시 이용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BGH, Urteil vom 1. 7. 2014 – VI ZR 345/13, 최신독일판례연구, 로앤비(www.lawnb.com), 2014.09, 1-9.

<sup>24</sup> BT-Drs. 18/13013, S.28.



트위크집행법 제1조 제3항에 의해서 포섭되는 위법한 콘텐츠를 근거로 필요해야 한다(제14조 제3항). 이러한 정보제공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청구한 정보제공요청의 적법성에 관한 법원의 사전 명령이 필요하다(제14조 제4항). 서비스제공자는 법원의 명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제14조 제5항).

## IV. 평가 및 전망

소셜 네트워크 법집행법은 특히 소셜 네트워크에서 발생하고 있는 증오범죄와 가별적인 가짜뉴스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처하는 것은 필요하고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법률은 입법과정에서 학계, 언론계, 재계 등으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았고 시행 후에도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 법률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주로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의 방법에 있었다. 즉 이 법률은 공공질서의 보장에 대한 책임을 민간인인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정당한 내용에 대한 과도한 삭제나 차단 등 소위 과잉차단(oberblocking)이 예상될 수 있다.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들은 일반적으로 과태료 처분이나 나아가서 형사처벌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순전히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내용을 삭제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법률은 ‘위법한 콘텐츠’와 이러한 내용의 ‘명백성’ 등 불특정 개념의 사용으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되고 가치 있는 콘텐츠의 삭제를 통해서 정보 및 표현의 자유(기본법 제5조 제1항)를 제한하며 소셜 네트워크 제공자의 직업의 자유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위법한 콘텐츠의 지체 없는 인식과 심사’를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3조 제2항 제1호는 ‘실제로 적극적으로 인식한 이후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EU전자상거래지침 제14조 제1항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판되고 있다.<sup>25</sup> 기본권 침해와 EU지침의 위반 문제는 이와 유사한 법률을 도입하려고 하는 국가가 유의해야 할 점이다. 따라서 이 법률과 관련하여 이미 제기되어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판례를 통해서 제기될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후속 작업이 필요하다.

<sup>25</sup> Liesching, Die Durchsetzung von Verfassungs- und Europarecht gegen das NetzDG, MMR 2018, S.26, 29.

## 참고문헌

BT-Drucksache 18/12356, 16.05.2017, S.1-32.

BT-Drucksache 18/13013, 28.06.2017, S.1-24.

Guggenberger, Nikolas, Das Netzwerkdurchsetzungsgesetz in der Anwendung, NJW 2017, Heft 36, S.2577-2582.

Handel, Timo, Hate Speech – Gilt deutsches Strafrecht gegenüber ausländischen Anbietern sozialer Netzwerke?, MMR 2017, Heft 04, S.227-231.

Liesching, Marc, Die Durchsetzung von Verfassungs- und Europarecht gegen das NetzDG, MMR 2018, Heft 01, S.26-30.